

제 660 호  
1978. 5. 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748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3
제 1749 호 :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3
제 1750 호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16
제 1751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18
제 1752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 규칙 .....	19
제 1753 호 :	서울특별시남서울대 공원건설사업소사무분장 규칙 .....	20
제 1754 호 :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21
제 1755 호 :	서울특별시건설자재사업소사무분장규칙 .....	22
제 1756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 규칙 .....	23
제 1757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	2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관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748 호

서울특별시사무관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통계담당관"을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중 "담당관은 서기관으로"를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통계기준제, 통계조사제와 자료처리제"를 "통계기준제와 통계조사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전산담당관) ①전산담당관 밑에 전산1계와 전산2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전산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계별 전산처리 및 부대사무의 범위는 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1. 전산1계

가. 전산화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다. 전산계산실의 운영 관리

라. 전산처리 및 부대사무

마.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산2계

가. 전자계산기 운영기술의 연구개발

나. 전산화 타당성 조사 및 업무개발

다. 전산처리 및 부대사무

제1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공보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담당관 1인을 두고,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여 담당관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문화재요원을 둔다.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의4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회계1과) ①회계1과에 계약1계, 계약2계와 회계심사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회계1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소관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된 출납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 1제

가. 공사도급계약

나. 용역계약

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라.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약 2제

가. 물품구매계약

나. 제조, 운반, 수선 및 대차 계약

다. 조달물품구매

라. 출입업자 등록

마.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본청 물품의 출납보관

3. 회계심사제

가. 회계제도의 연구

나. 회계예규의 정비

다. 회계문서의 과목조사 및 계수검산

라.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마. 물품검수 입회와 공사검사 입회

제 21 조의 2 ( 회계 2 과 ) ① 회계 2 과에 관리제, 지출 1 제와 지출 2 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회계 2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제

가.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및 재정보증제도의 운영

나. 세축에 관한 사항

다. 국제 소화에 관한 사항

라. 수입증지의 수불

마. 새마을금고 인가에 관한 사항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출 1 제

가. 시비 지출의 총괄

나. 본청 소관 시비의 지출

다. 시비 자금의 관리

라. 시비 지출 증빙서의 보관

마. 원천징수 불입

3. 지출 2 제

가. 시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나.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

<p>권의 출납보관  라. 시금고의 감독  마. 국비지출의 총괄</p> <p>제 21 조의 3 (관제과) ①관제과에  재산관리계, 재산처분계와 국유재산  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관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제외한다.</p> <p>1. 재산관리계  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 및  조정  나. 공유재산의 취득, 차입 (도시  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우  는 제외)  다. 시유창고의 관리  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p> <p>2. 재산처분계  가. 잡종재산의 대부 및 처분  나. 잡종재산처분에 따른 지적  정리 및 등기이전  다.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p>	<p>3. 국유재산계  가.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총괄  나.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관  리 및 처분  다.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 처분  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  이전</p> <p>제 21 조의 4 (영선과) ①영선과에 공  사 1 계, 공사 2 계와 설비계를 두고  공사 1 계장과 공사 2 계장은 지방전  축기사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영선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사 1 계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시유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수리공사의 계획, 설계와 시공  감독  나.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p> <p>2. 공사 2 계  가. 특수건축물 및 특명사항의  시공감독 및 보수</p> <p>3. 설비계  가. 시유건축물 및 특수건물에</p>
--------------------------------------------------------------------------------------------------------------------------------------------------------------------------------------------------------------------------------------------------------------------------------------------------------------------------------------------------------------------------------------------------------------------------------------------------------------------------------------------------------------------	--------------------------------------------------------------------------------------------------------------------------------------------------------------------------------------------------------------------------------------------------------------------------------------------------------------------------------------------------------------------------------------------------------------------------------------------------------------------------------------------------------------------------------------

대한 전기·수도·위생·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보수  
 나. 시유건축물 대지에 관한 토  
 목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감독

제 22 조 (세무 1 과) ①세무 1 과에  
 세정제, 과징 1 제, 과징 2 제와 세입  
 총괄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②세무 1 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징 1 제  
 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  
 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에 관한 사항을, 과징 2 제는 등록  
 세, 면허세, 주민세, 도축세, 마권세  
 및 사업소세의 과징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한다.

1. 세정제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세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세정운영의 조정통제  
 라. 지방세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정비 및 해석

마. 구·출장소 시달문서의 사전  
 심사

바.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사. 구·출장소 세무행정의 전반  
 적 지도

아. 국내 다문과 및 과내 다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징 1 제, 과징 2 제

가. 시세의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나. 시세부과징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부과액 집계와 총괄  
 라. 구행정청의 실적심사 및 분석  
 마. 시세 체납처분에 관한 지도  
 감독

3. 세입총괄제

가. 시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의 세입총괄

나. 세입징수보고서의 총괄 및  
 세입결산

다. 시금고 및 시공금 수납은행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라. 구·출장소 세입업무의 지도감독  
 마. 과년도 시세정리 지도감독

바. 세외수입(특별회계 제외) 징수  
 결의

제 22 조의 2 (세무 2 과) ①세무 2 과에  
 심사 1 제, 심사 2 제와 세외수입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②세무 2 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심사 1 제 및 심  
 사 2 제의 제별 재조사 청구 및 심  
 사청구 사무의 범위는 과장이 정한다.

1. 심사 1 제

가. 재조사 청구의 심의결정

나. 심사청구의 경유 진달

다. 세무관계 소송업무

라. 지방세 심사위원회 운영

마. 과내 다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심사 2계

- 가. 재조사청구의 심의결정
- 나. 심사청구의 경유진달

3. 세외수입계

- 가. 도로수익자부담금 과징 지도
- 나. 세외수입의 개발 및 요율조정 통계
- 다. 세외수입의 분석
- 라. 세외수입에 관한 법령,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안합의

제 23 조 (세무조사과) ①세무조사과에 조사 1계, 조사 2계와 평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무조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과내 각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사 1계에서 관장하고, 조사 1계 및 조사 2계의 계별 세무조사 사무의 범위는 과장이 정한다.

1. 조사 1계, 조사 2계

- 가.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나. 음성 및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및 추징
- 다. 범죄사건의 처리
- 라. 세무사찰
- 마. 세무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2. 평가계

- 가. 토지와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사항
- 나. 건물의 종별설정과 수정에

관한 사항

- 다. 부동산시가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 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상각자산과표 조사에 관한 사항
- 바. 무신고 이동지에 대한 처리 사항
- 사. 부동산 가격통제에 관한 사항

제 23 조의 2 (지적과) ①지적과에

지적관리계, 지적 1계와 지적 2계를 두고, 계장은 지적기과 또는 지방지적기과로 보한다.

②지적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관리계

- 가. 지적 입부계획의 수립 및 분석
- 나. 세출예산의 조정배분 요구
- 다. 등기축락에 관한 사항
-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적 1계

- 가. 지적공부의 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 나. 지적측량에 관한 지도감독
- 다. 지적삼각성과표 관리

라. 경제감정인 선임  
 마. 지적에 관한 등본 발급지도  
 바. 지적측량검사  
 3. 지적 2제  
 가. 지적전산화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나. 수치지적측량의 계획수립 및 집행  
 다. 축적변경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라. 축량계산프로그램작성  
 마. 면적측량집중관리

제 26 조 제 1 항중 "의무제장은 지방의무기과로"를 "의무제장은 지방의무기과 또는 지방보전기과로"로 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환경과) ①환경과에 환경행정계,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를 두고 환경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질보전계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대기보전계장은 지방화공기과 또는 지방보전기과로 보한다.

②환경과의 제반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행정계  
 가. 공해대책의 종합조정  
 나. 공해업무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다. 공해관계위원회의 운영  
 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조업정지, 취소

마. 공해관계요원의 교육  
 바. 공해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  
 사. 파내 다른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질보전계  
 가. 수질, 토양오염 (이하 "수질오염"이라한다)의 방지대책수립  
 나. 수질오염조사 및 분석  
 다. 수질오염측정망의 유지, 관리  
 라. 수질오염발생원에 대한 지도 감독  
 마.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대체등의 행정명령  
 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기술적 검토  
 사. 기타 대기보전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대기보전계  
 가.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악취 (이하 "대기오염"이라 한다)의 방지대책수립  
 나. 대기오염조사 및 분석  
 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유지, 관리  
 라. 대기오염발생원에 대한 지도 감독  
 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대체등의 행정명령  
 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기술적 검토  
 사. 기타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 56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6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 조 (도시계획 1 과) ① 도시계획 1 과에 종합계획계, 지역계획 1 계와 지역계획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다만, 종합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 1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계획계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지역지구단위 도시계획 수립 및 조정

다. 도시계획법 제 4 조 및 단지 사업운영

라. 도시계획상 필요한 제도면 제작 및 보관관리와 행정용 자료의 관리

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계획 1 계

가. 토지이용 계획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법 제 2 장제 2 절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시설동원자원(토지)의 조사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 2 계

가. 생활환경계획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생활환경관계계획(공원, 시장, 학교, 도서관, 공동묘지, 도살장, 화장장, 운동장, 유원지 등)

제 56 조의 2 (도시계획 2 과) ① 도시 계획 2 과에 시설계획계, 가로계획 1 계와 가로계획 2 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 2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계획계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 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쓰공급설비, 방수, 방화, 방조, 방풍, 사방설비, 수도, 저수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공용의 청사, 공공용지, 관광탐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계획

나.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가로계획 1 계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광장, 철도, 계도, 석도, 고속철도,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시설 계획

3. 가로계획 2 계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p>시설중 폭 20m 이하의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동구, 하수도, 하천시설 계획</p> <p>나. 사도개설에 관한 사항</p> <p>제 60 조 제 2 항 제 1 호중 라국을 사목으로 하고 동조항 제 1 호에 라, 마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50 세대 이상의 국민, 민영 주택 사업계획의 승인</p> <p>마.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p> <p>바.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지도, 감독</p> <p>제 60 조 제 2 항 제 3 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시영주택전립 및 택지조정에 따른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 (다만, 기전립된 시영주택단지 내의 재산은 제외한다)</p> <p>제 61 조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제와 주택지도제를 두고, 주택관리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택지도제장은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p> <p>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중 "주택비 특별회계"를 "국민주택비 특별</p>	<p>회계"로 하고, 동조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주택지도제</p> <p>가. 시영주택의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공</p> <p>나. 시영주택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p> <p>다. 국민주택분양가격의 승인</p> <p>라. 50 세대 이상의 국민, 민영 주택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p> <p>마. 50 세대 이상의 국민, 민영 주택 사업계획승인의 협의</p> <p>제 62 조 제 2 항 제 1 호중 다, 라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p> <p>제 62 조 제 2 항 제 2 호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조항 제 2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나. 무허가건물 신발생방지계획 및 지도, 계몽</p> <p>제 62 조제 2 항제 3 호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조항 제 3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항측도의 다목적활용 및 보급</p> <p>제 63 조제 2 항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항중 제 3 호를 제 4 호로하며 동조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2. 개량 1계

가. 주택개량 추진에 관한 입사조  
차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의 지정  
과 사업시행에 따른 추량,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고지대 정리사업 계획의 수  
립 및 조정

3. 개량 2계

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나. 재개발지구내의 지적분할 및  
추량에 관한 사항

다. 재개발지구내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라.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매각 결  
정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제 1항중 "운수기획제와 교  
통시설"을 "운수기획제, 교통시설 1  
계와 교통시설 2계"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2항에 제 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시설 1계

가. 교통시설계획의 종합조정

나. 고속버스터미널 지도감독

다. 시외버스터미널 지도감독

라. 세마을 교통회관 지도감독

마. 교통시설 2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교통시설물의 설치에 관  
한 사항

4. 교통시설 2계

가. 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

나. 교통정보센터 및 전자감응식  
교통신호 체계 설치

제 69 조 제 2항 제 1호중 바목을 다  
음과 같이 한다.

바. 정류소의 조정

제 7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1 조 (관광차) ①관광차의 관광전  
용제, 관광사업제와 관광지도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광차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진흥제

가.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나. 관광선진 및 국민관광 보급,  
개발

다. 국내 여행알선업의 허가

라.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마. 관광안내소의 운영

바. 관광협회 운영의 지도 감독

사. 국내 다른계의 주광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관광사업제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건달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 시  
설업의 등록

다. 관광용 기지정에 관한 사항

<p>3. 관광지도제</p> <p>가. 관광사업체의 지도, 단속 나. 관광종사원의 교양지도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라.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p> <p>제 74조의 2 제 2항 제 3호중 마목을 삭제한다.</p> <p>제 7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7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76조의 2 (하수시설 1과) ①하수시설 1과에 계획계, 시설계와 보수계를 두고 계장은 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하수시설 1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계획계 가. 하수도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나. 내수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수립 다. 구·출장소 시행 하수도 시설공사의 지도, 감독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시설계 가.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 감독 나.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에 대</p>	<p>한 기술업무 지도</p> <p>3. 보수계 가. 하수도 시설의 보수, 계량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나. 하수도시설의 보수, 개량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다. 공공용지의 절용,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하수도 대장 작성 및 관리</p> <p>제 76조의 3 (하수시설 2과) ①하수시설 2과에 처리계, 배수계와 설비계를 두고 처리계장과 배수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 전기기과로 보한다. ②하수시설 2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처리계 가. 하수처리사업의 계획수립 나. 하수처리장의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업무의 지도, 감독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배수계 가. 우수지 펌프장의 계획수립 나. 우수지 펌프장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다. 우수지 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사항</p>
------------------------------------------------------------------------------------------------------------------------------------------------------------------------------------------------------------------------------------------------------------------------------------------------------------------------------------------------------------------------------------------------------------------------------------------------------------------------------------------------------------------------------	------------------------------------------------------------------------------------------------------------------------------------------------------------------------------------------------------------------------------------------------------------------------------------------------------------------------------------------------------------------------------------------------------------------------------------------------------------------------------------------------------------------------------------------------------------

3. 설비계

- 가. 하수처리장 및 우수지점프장의 기건설비공사 계획수립
- 나. 하수처리장 및 우수지점프장의 기건설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 다. 하수처리장 및 우수지점프장 기건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제 77조 제 1항중 "치수계와 수방계" 들 "치수 1계, 치수 2계와 수방계" 로 한다.

제 77조 제 2항중 제 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항중 제 2호를 제 3호로 하고 동조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수 1계

- 가. 하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나. 직할 지방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 다. 직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 라.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협조 및 시공감독
- 마. 하천 대장 관리
- 바.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치수 2계

- 가. 준용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 나. 준용하천의 유지관리
- 중건의 제 77조 제 2항 제 2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거설계 및 수문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749 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항중 "환경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를 "환경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로 한다.

①중구, 마포구, 용산구의 상업과에 상업계, 환경계와 녹지계를 두고, 동

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영등포구의 산업과에 상공계와 농정계를 두며 기타 구의 산업과에 상공계, 농정계와 환경계를 둔다.

제 1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 환경과 ) ① 환경과에 환경제 1 계와 환경제 2 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② 환경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 과내 자체의 주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환경제 1 계에서 관장하며 개별 분장사무는 지역별로 분담하며 그 분담지역은 과장이 정한다.

1. 환경제 1 계, 환경제 2 계

가.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나. 공해연소에 대한 행정처분  
다. 공해에 관한 제반자료의 조사 분석

라.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 도시정비과 ) ①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 도시계획계를 두고, 도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도시계획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② 도시정비과에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정비계

가. 도시정비위원회 운영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지장물 이전 및 보상.

라.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세부 사업 운영

마. 과내 다른계의 주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계

가. 도시계획에 의한 제지회선 및 건축선의 명시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중 어린이공원의 지적교사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20 m 이하의 일반도로 ( 2 개구침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 보행자 전용도로 ( 2 개구침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 12 m 이하의 하천, 6 m 미만의 하수도, 소매시장 단일종류의 운동장, 30 년 미만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학교 ( 대학은 제외 ) 시내버스 정류장등의 도시계획조사 입안 및 지적교사에 관한 사항

제 1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의 2 ( 건축과 ) ① 중로구, 중구, 성북구, 마포구, 용산구의 건축과에 건축계와 건축지도계를 두고, 기타 구의 건축과에 건축제 1 계와 건축제 2 계를 두며, 제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②건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제 1제와 건축제 2제의 분장사무는 건축제 및 건축지도제의 사무를 구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구역은 과장이 정하며 이 경우 과내 각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건축제 1제에서 관장한다.

1. 건축제

가. 건축허가, 착공검사 및 준공검사

나. 준공검사의 준공까지의 공사 감독

다.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

라.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 감독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지도제

가.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나.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다. 축대의 안전도 검사 및 위법축대에 관한 사항

라. 영선에 관한 사항

마. 시영주택(아파트)건축 및 보수공사

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 15조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목과에 관리제 1제, 관리제 2제,

토목제, 가로정비제와 하수제를 두고, 관리제 1제장, 관리제 2제장과 가로정비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토목제장과 하수제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 15조 제 2항 제 3호중 나. 다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항 제 4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빗물목의 정비

제 15조 제 2항중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수제

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 및 집행

나. 하수도 및 하천시설의 유지 관리

다. 비관리형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라. 하수도 및 하천 대공의 작성 및 관리

마. 침수지역 및 수방의 대책

바. 유수지 펌프장의 운영관리

사. 공공용지 점용·사용 및 처분의 협의

제 17조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구·마포구·용산구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와 보수제를 두고, 종로구

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보수제와 기전제를 두고, 성복구, 서대문구, 관악구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1제, 공무제 2제와 기전제를 두고, 기타 구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1제와 공무제 2제를 두며, 각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다만, 기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제 17조 제 2항의 제 1호중 가. 바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수기의 신설 및 교체(기전제를 두는 구의 '교체업무'는 기전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바. 소배수지(저수조)의 운영관리(공무제 1제, 공무제 2제에 한한다)

아. 가압펌프장, 특수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기전제를 두지 아니하는 구의 공무제 1제, 공무제 2제에 한한다)

제 17조 제 2항 제 2호중 다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배수지(저수조)의 운영관리

마. 가압펌프장, 특수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기전제를 두는 구에서는 기전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 17조 제 2항중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전제

가. 양수기의 수급관리 및 교체업무

나. 가압펌프장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

다. 특수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라. 기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감독

마. 기전설비의 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

바. 전력수급계획 및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50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목과에 관리계, 토목계와 하수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토목계장과 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 9 조 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계

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 및 집행

나. 하수도 및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다. 비관리형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라. 하수도 및 하천대장의 작성 및 관리

마. 침수지역 및 수방의 대책

바. 우수저류장 등의 운영관리

사. 공공용지 점용, 사용 및 처분의 협의

제 10 조를 제 11 조로 하고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 (수도과) ① 수도과에 관리계, 과정 제 1 계, 과정 제 2 계의 공무원제를 두고 관리계장, 과정 제 1 계장, 과정 제 2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원계장은 지방토목 기사로 보한다.

② 수도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정 제 1 계와 과정 제 2 계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장하되 그 분담구역은 과장이 지

정한다.

1. 관리계

가. 수도행정외 종합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청중단속 및 당직 (별도 청사에 한한다)

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소속공무원의 급여, 후생 및 고용원 (임시직을 포함한다)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차량의 유지관리

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계약 및 조성의 총괄

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의 수납

사. 급수조례 위반과 처분

아. 수도사업특별회계 통화계산서의 수불, 보관 및 납부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가. 상수도 시공업의 영업허가 및 상수도 시공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카.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정 제 1 계, 과정 제 2 계

가. 급수사용료의 조정계획 및 통계

나. 수도전파 관리 및 양수기 점검

다. 급수사용량의 점검



라. 급수조작 위반자의 적발보고 및 가산금의 과징

마. 급수증지, 폐건과 사후관리 및 동해계

바. 공설공용 수전의 관리

사.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수입금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

자.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의 수납소인 및 수납부 관리

차.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과금의 교부 및 청구

카. 수도사업특별회계 과오납금의 추당 및 환부 처리

다. 급수사용료 관계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

3. 공무계

가. 양수기의 신설 및 교체

나. 소화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다. 유수보수 및 유수탐지

라. 조례, 규칙, 위반 급수공사의 단속

마. 배.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량과 유지관리

바. 소매수지(저수조) 및 가압 펌프장의 운영관리

사. 급수조정 및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아. 특수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자. 급수에 관한 민원처리  
차. 각종 급수업무의 통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51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전력계"를 "전력1계, 전력2계"로 하고, 동조항중 "전력계장"을 "전력1계장, 전력2계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력1계, 전력2계의 분장사무는 지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지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 9 조 제 2 항 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력 1계, 전력 2계

가. 송배전시설 및 조명, 환기, 냉난방 기타 부대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나. 전선로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관리

라. 소관시설 사고의 방지, 조사 및 배상

마. 소관시설물의 검사, 수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전파관리법규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52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사업소에 서무계, 정비 1계와 정비 2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정비 1계장과 정비 2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나. 문서, 편인, 보안

다.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라. 청중단속 및 당직

마. 직무교육

바. 예산, 회계, 조달

사.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아. 차량정비수수료 조정, 징수 및 보고

자. 도서, 비품 및 차량유지관리

차. 용도품 및 비품구비발의 및 영선

카. 공사 및 구입품검수 및 입회

타.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

파. 기타 다른계의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비 1계

가. 차량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및 부품 수급계획

나. 정비용 부품(적접재료) 구매발의 및 검수

다. 부품 및 자재보관, 출납, 결산  
 라. 정비용 고정자산 취득관리  
 마. 불용품 및 폐품의 결정  
 3. 정비 2계  
 가. 차량정비 지도감독  
 나. 정비요원 기술훈련  
 다. 정비용 공기구 및 자재(간접  
 재료) 구매발의 및 검수  
 라. 정비차량의 정기점검  
 마. 검사대행  
 바. 기타 자동차정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3 호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사무분장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 (이하 "사업  
 소"라 한다)의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관리과 ) ① 관리과에 관리계  
 와 동물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동물계장은 3급을  
 류인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축산기  
 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관인관수, 보안 및 청  
 사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기본운영 계획

라.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마. 자문위원회 운영

바. 기타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물계

가. 동물원 시설계획

나. 동물수용계획

다. 동물의 사육 및 방역관리

라. 동물원운영 및 관리

제 3 조 ( 공사과 ) ① 공사과에 기획  
 계, 공사 1계와 공사 2계를 두고  
 기획계장은 지방농림기과로, 공사 1  
 계장은 지방토목기과 및 지방건축  
 기과로, 공사 2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및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라. 공사용 장비의 정비  
 마. 공사용 자재의 수급관리 및 보관  
 바.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계  
 가. 소규모도로 포장  
 나. 굴착도로의 포장복구  
 다. 파손 포장면의 보수  
 라. 간선도로면의 시설물 개수  
 마. 현장공사용 장비의 유지관리  
 바. 도로순찰  
 사. 인부의 배치 및 작업감독

3. 가로등계  
 가. 가로등보수 및 유지관리  
 나. 소규모 가로등의 설치  
 다. 지하도 전기시설물의 보수

제 3조를 삭제하고 제 4조를 제 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755 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  
 사무분장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사업소에 관리계, 생산계와 장비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생산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장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및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의 지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관인관수, 보안 및 청사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라. 공사용 자재의 수급 및 보관  
 마.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생산계</p> <p>가. 생산물 관리</p> <p>나. 골재 및 아스콘 생산계획 및 생산</p> <p>다. 현장공사용 장비의 유지관리</p> <p>3. 장비계</p> <p>가. 생산장비구입 및 설치계획</p> <p>나. 생산장비 보수관리</p> <p>다. 전기설비 및 각종 기계유지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1978년 5월 31일</p> <p>◎ 서울특별시규칙제 175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2 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p> <p>(1) 사업소에 등록 1 계, 등록 2 계 및 검사계를 두고, 등록 1 계장 및 등록 2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검사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p> <p>(2) 사업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등록 1 계</p> <p>가. 인사, 문서, 보안 및 청사관리</p> <p>나.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p> <p>다.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및 압류</p> <p>라. 자동차 제증명 발급</p> <p>마.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등록 2 계</p> <p>가.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등록이판 (전출 및 전입)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p> <p>3. 검사계</p> <p>가. 자동차검사 (신규, 계속, 임시, 타관할, 예비)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 두즈변경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경비 기록</p>
--------------------------------------------------------------------------------------------------------------------------------------------------------------------------------------------------------------------------------------------------------------------------------------------------------------------------------------------------------------------------------------------------------------------------------------------------------------------------------------------------------------------------------------	-------------------------------------------------------------------------------------------------------------------------------------------------------------------------------------------------------------------------------------------------------------------------------------------------------------------------------------------------------------------------------------------------------------------------------------------------------------------------------------------------------------------------------------------------------------------------------------

<p>부 정 리</p> <p>라. 원동기 및 차대 제작자에 관한 사항</p> <p>마. 기관재사용 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p> <p>1978년 5월 31일</p> <p>&lt;별 표&gt;</p>	<p>◎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7 호</p> <p>서울특별시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소방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lt;별표&gt;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중 "영등포소방서"란을 별첨과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서번</p> <p>명 칭</p> <p>영등포소방관 파 출 소</p>	<p>위 치</p> <p>영등포구 영등포 동 4가 100</p>	<p>관 할 구 역</p> <p>영등포구중 영등포동,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포 3가, 영등포동 4가, 영등포동 5가, 영등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 문래동 1가, 문래동 2가, 문래동 3가, 문래동 4가, 문래동 5가, 문래동 6가, 도림동, 신길동</p>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 등 포 소 방 서	당산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9	영등포구중 당산동 1가, 당산동 2가, 당산동 3가, 당산동 4가, 당산동 5가, 당산동 6가, 양평동 1가, 양평동 2가, 양평동 3가,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노량진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노량진동 153-8	관악구중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상도동, 상 도 1동
	구로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구로동 409-1	영등포구중 신도림동, 구로동 (구로 3동 170번지 3호 254번지 283번지 제외)
	화곡소방관 파 출 소	강서구 화곡동 24-61	강서구중 염곡동, 목동, 동촌동, 화곡동, 신월동
	시흥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독산동 170-1	영등포구중 독산동 (독산동 117번지 - 138번지의 9호, 독산동 632번지의 35까지 제 외), 시흥동
	사당소방관 파 출 소	관악구 사당동 733-1	관악구중 사당동, 동작동, 방배동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 등 포 구 소 방 서	오류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중동 213-20	영등포구중 교척동, 개봉동 오류동, 중동, 은 동, 천왕동 강서구중 신정동
	신림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신림동 230부락외 1	관악구중 신림동, 신대방동, 대방동
	공단소방관 출장소	영등포구 구로동 188-5 독산동 117-5	영등포구중 가리봉동, 구로3동 170번지 3호, 254번지, 283번지, 독산동 117번 138번지의 9호, 독산동 632번지-8 번지의 35까지
	봉천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봉천동 38-1	관악구중 봉천동
	여의도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여의도 동 1-841	영등포구중 여의도동
	공합소방관 파출소	강서구 내발산동 407-1가호	강서구중 마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합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 동, 오색동